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윤 홍 식

(전북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격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주제어: 일과 가족의 양립, 가족정책, 성통합적 관점, 젠더, (탈)가족화

1. 문제제기: 왜 가족정책인가?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시민들의 통념 속에 자리 잡은 당위적인 '가족'의 상과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실제 사이의 불일치를 점점 더 심화시켜 가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급격히 진행되었던 합계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생계를 비판한 가족의 동반 자살 등은 '매정한 사

* 본 논문은 2005년도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익한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한다.

회의 인식처)'라는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당위적 믿음이 허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든든한 시민의 인식처로써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더구나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요구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개별가족에게 전가해 온 한국사회에서, 1997년 경제위기와 함께 급격히 진행된 가족의 변화는 실로 우리사회의 총체적 '위기'라고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²⁾ 사회안 전망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의 복지를 담당했던 가족변화의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에 있다.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합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지역적·현상적 대응만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기'의 대표적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우리사회는 개별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게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제도하는 것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³⁾ 그러나 서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출산력은 전통적 가족가치와 형태를 유지·강화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육아휴직제도, 여성의 고용상태 등 일과 가족의 양립과 같은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leeboos, 2003). 전통적 가족가치와 형태가 강조되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유럽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Misra and Moller, 2005; Esping-Andersen, 1996; Valiente, 2002). 즉, 현재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은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를 통해서는 찾을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합리적 대안은 '전형적 가족'을 근간으로 제도화된 현재의 복지국가 틀 내에서 찾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든스(Giddens, 2000)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가족정책은 복지국가 재편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한다. 즉, 복지국가 재편은 가족정책을 통해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필요와 국가·사회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6)이 지적한 것과 같이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지위변화가 후기산업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a defining element)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가족 내 돌봄(또는 보살핌)의 문제에 관한 대응은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남성 생계부양자와 보살핌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성별분리에 근거한 복지체제는 가족의 변화로 야기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욕구를 감당할 수 없다.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의 약화는 복지국가에게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Mahon, 2002), 그 대안의 중심에 가족정책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먼저 선행되는 두 가지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 1) '매정한 세상에서의 안식처(Haven in a heartless worlds)'는 크리스토퍼 래쉬(Christopher Lasch)의 1977년 저작의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다.
- 2) 서구에서의 가족의 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부담을 국가 및 사회에서 가족으로 전가되는 과정 중에 나타난 현상(이미경, 1999)이라면 한국에서 위기는 전통적으로 노동의 재생산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던 가족이 더 이상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다. 두 가지 선행되는 쟁점 중 하나는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쟁은 페이트만(Pateman, 1987)이 제기한 윌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의 딜레마를⁴⁾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를 위한 가족정책의 관점, 틀, 영역(내용), 방향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의 시장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등 복지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요구되었던 과제의 완결과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편적 보살핌(노동)과 생계부양에 대한 요구가 한국사회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층적 요구에 대해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성’이 어떠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문제를 성 통합적 복지정책의 중요한 계기로 삼았던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과 (Liljestrom, 1978; Hirdman, 1998; 미야모토, 2003) 보편적 보살핌 노동에 대한 요구가 현재 서구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사안임을 천착했을 때(Mahon, 2002; Bergqvist and Nyberg, 2002) ‘가족정책’을 성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복지국가 건설의 초입에 있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되는 논쟁에 대한 검토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고, 둘째는 가족정책 중 ‘일과 가족의 양립’ 과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먼저 가족정책의 정의에 대한 논란에서는 가족정책의 독자성 여부, 정책의 주체와 단위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 및 구성원의 삶이 시장에서의 화폐소득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핌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가족정책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를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할 것이다.

1)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⁵⁾

하딩(Harding, 1996)은 가족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분석적인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 4) 윌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는 여성의 보살피는 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여성의 생물학적 본성에 근원한다는 그녀의 주장과 국가에 의한 남녀공학의 실시 등과 같이 소위 공적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강조한 주장 간의 불일치를 말한다. 즉, 딜레마는 결국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어머니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로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 5) 가족정책은 가족의 정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가족정책의 범위는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그 자체로 광범위한 논쟁을 수반하는 관계로 ‘가족정책’이라는 상대적으로 실천적 논의에 집중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가족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한다. 실제로 일부학자들은 가족정책이 독립적 영역이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Kammerman and Kahn, 1978; Zimmerman, 1992) 다른 학자들은 가족정책과 사회정책의 차별성은 없다고 강조 한다(Myrdal, 1968; Zimmerman, 1992에서 재인용). 먼저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정책이란 주장은 1970년대 케머만과 칸(Kammerman and Khan, 1978)의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케머만과 칸은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짐머만(Zimmerman, 1992)도 가족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개별적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정책선택의 집합체로써 가족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족정책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케머만, 칸, 짐머만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개별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기보다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진숙, 2003; 최경석·김양희·김성천·김정운·박정운·윤정향, 2001;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 2002; 김성천, 2000; 양옥경, 2002). 예를 들어, 이진숙(2003: 21)은 가족정책을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성천(2000)은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그리고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족(복지) 정책이란 용어 대신 ‘가족지원정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수정(2004)은 어머니와 아동의 필요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가족지원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정의들은 세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정의들을 통해서 가족정책을 사회정책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적 일자리 창출은 보편적 생계부양자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므로 노동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수급단위로 하는 연금, 실업급여(고용보험) 등은 사회보장의 주요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 수급자가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족정책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미르달(Myrdal, 1968; Zimmerman, 1992에서 재인용)은 가족정책이란 사회정책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가족정책을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구성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든 대부분의 사회정책을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함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한다(월렌스키, 루버트, 한, 재미슨, 1992). 그러나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and Specht, 1986)는 이러한 문제가 가족정책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소위 ‘정책’이라는 개념이 노정하고 있는 일반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사회정책도 가족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가족정책’을 어떤 배타적 영역을 갖는 독립적인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이기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해당정책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김인숙·정재훈·윤홍식, 2004). 이렇게 가족정책을 ‘관점’에 근거해 정의했을 때 개별 정책은 가족정책일 수도 있고 다른 정책의 부분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주체’의 문제로 누구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정의할 것인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

내외를 막론하고 암묵적으로 가족정책의 주체는 국가(정부)이고, 시민은 국가의 행위인 가족정책의 수동적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이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관련된 국가(정부)의 일련의 행동들이라면 국가의 행위는 시민의 필요와 욕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즉, 가족정책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시민과 단위로서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⁶⁾. 특정한 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국가의 행위인가가 판단의 주요한 준거가 되어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족 및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의식적인 정책 또한 가족정책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족정책의 수급단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가족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정의들이 대부분 가족을 단위로 사고되고 있는데, 가족정책의 수급단위로 ‘가족’이라는 설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라는 전제하에 가족 구성원을 가족이라는 집합적 단위를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점이었다면,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은 개별 구성원의 관점과 이해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해체될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 이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선우덕·황나미·송현중·박영란·윤홍식·김남수, 2004). 본 논문의 ‘3장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같은 가족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개개인도 서로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공통의 이해와 개별 가족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들을 모두 포괄하는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 근거해 가족정책을 정의하는 것이 자칫 가족정책에 관한 논의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추상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가족정책을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복지가 시장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활동과 가족원(특히 아동)에 대한 보살핌에 의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가족정책은 개별 구성원의 시장노동 및 보살핌 노동의 보장과 이들 간의 조화(양립)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⁷⁾

-
- 6) 물론 국가 또한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소위 ‘필요’를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가 시민의 생활을 변화 또는 지원하기 위해 의도된 정책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또한 시민과 같이 주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개별 시민들의 집합체로 이해한다면 국가의 의도된 행위는 개별 시민들의 (비록 전체 시민의 통일된 의사가 아닐지라도) 집단적인 의사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국가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 7) 이렇게 가족정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는 가족정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에서 가족정책의 출발이 1910년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보장정책으로부터 출발해 1930년대 인구감소 문제를 계기로 공식화 했다는 점이다 (Liljestrom, 1978). 즉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출산력 감소를 계기로 공식화된 가족정책의 핵심은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보장과 이들이 경제활동과 아동 출산 및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문제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Liljestrom, 1978: 21). 실제로 1970년대 이르러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은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 참여로 아동이 있는 가족이 정책의 중심에 놓이게 됨으로써 가족정책이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하는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2) 차이와 평등을 둘러싼 논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⁸⁾

<표 1>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양립형태	차이에 근거한 양립	순차적 양립	보편적 양립
양립의 주체	단위로써 가족	여성	여성과 남성
양립의 방향	성별분리에 근거한 전형적 가족형태 지향	보편적 생계부양 지향 (2인 생계부양자)	보편적 보살핌과 생계부양 지향
이론적 근거	① 모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② 집단으로써 가족의 이해와 가족을 구성하는 개별구성원 의 이해는 일치함	① 여성에게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이중적 역할을 요구하나 ② 암묵적으로 보살핌의 주체로서 여성의 특수성 인정	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라는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② 모성권과 노동권의 대립 완화
대표적 정책사례	주부연금, 아동양육수당 등	부모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등	아버지 할당제 (부모휴가)

차이와 평등에 관한 문제는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논의할 때 핵심적 논쟁점 중 하나이다. 페이트만(1987)이 윌스톤크래프트⁹⁾의 딜레마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여성(어머니)의 시민권적 권리가 남성(아버지)과의 평등에 근거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는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페미니즘의 중요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다(Lorber, 2005). 특히 평등과 차이에 대한 논쟁은 가족정책의 관점, 틀, 영역(내용),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은 여성의 모성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노동권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를 평등과 차이의 논쟁에 근거해 검토하고자 한다¹⁰⁾. 더불어 그 동안 양립여부를 중심으로 일과 가족 양립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은 ‘양립’ 여부의 문제이기보다는 누가 일과 가족을 양립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일과 가족을 양립하

8) 본 절의 논의는 레리아(2002)의 문제의식에 힘입은바 크다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9) 메리 윌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97)는 근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여성학자다. 그녀의 사상은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이라는 저서를 참고하라. Wollstonecraft, M. 1792.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London, England: Penguin Books.
 10) 세인즈베리 등 여러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복지국가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표 1은 젠더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리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아니다. 복지국가라는 커다란 거시적 영역에서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 가족정책이 가지는 특수한 일-가족 양립정책으로써의 제도적 속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즉, 개별제도에 대한 젠더적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제도가 지향하는 일-가족 양립의 형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세인즈베리 등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국가분류와 같이 젠더문제를 둘러싸고 복지자원이 어떤 (양립)형태로 체제마다 다르게 분배되는 가는 본 연구의 후속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으로써 국가 또는 체제의 특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별제도의 속성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는 주체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아니면 여성과 남성 모두 인가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했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주체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개별주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이 구성하는 단위로서 가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양립의 문제를 주체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양립' 문제가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 제한되는 것을 극복하고, '양립' 문제를 남성, 여성, 가족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 성별분업의 고착화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 1991)의 주장을 통해 그 이론적 근거를 고찰할 수 있다. 베커¹¹⁾는 전형적 가족은 남성(아버지)은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고 여성(어머니)은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을 단위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족형태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일과 가족의 양립' 주체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원이기보다는 개별 구성원의 집합체인 단위로서 가족(the family)이 되는 것이다. 단위로서의 가족이 주체가 된 일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사회는 가족의 필요와 시장의 필요를 상호의존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¹²⁾ 물론 '양립'이라는 것이 유사한(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병립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을 때, 성별 분리와 차이에 근거한 '전형적 가족'을 양립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수혜자인지를 떠나서) 양립 문제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차이에 근거한 양립은 베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위로서 가족이 주체가 된 효율적인 양립방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한 양립은 두 가지 전제를 가정한다. 하나는 모성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¹³⁾과 다른 하나는 단위로서 가족의 이해와 개별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는 주요한 논리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먼저 모성은 여성에게 자연적이고, 선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길리건과 초도로우(Gilligan, 1982, Chodorow, 1978; Freedman, 2003에서 재인용)는 (둘 간의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임신, 출산, 수유를 제외한 아동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연적이고, 타고난 생물학적 모성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모성이라고 주장한다¹⁴⁾(Freedman, 2002; Lasch,

11) 경제학의 효용극대화(the assumption of utility maximization)를 주장한 베커(Becker)의 주장은 기능주의 사회학자인 파슨스(Parsons)의 '전형적 가족'에 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베커(1991)에 의하면 효용극대화 가정에 근거했을 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상대적 우위성(comparative advantage)에 따라 가사일과 시장일로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베커는 첫째, 여성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동을 기르고 양육하고, 가사 일을 하는데 투자하도록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 성별에 의한 노동 분업은 가구 내 남성과 여성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별분업은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시킨다.

12) 이러한 논리는 노동 분업을 사회와 개인간의 관계로 이해했던 뒤르켐(Durkheim, 196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3) 파슨스(Parsons and Bales, 1955)는 어린아동에 대한 수유와 돌봄을 통해 여성의 강력한 우선권(모성)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생물학적 기능으로부터 면제된 남성은 여성의 모성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을 특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4에서 재인용). 아이젠슈타인(Eisenstein, 1986)도 생물학적 모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의 특별한 신체적 특성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을 돌보고 기르는 일은 생물학적 모성이 아닌 정치적 모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이같이 여성주의 관점에 근거한다면 성별에 따라 남녀의 역할을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로 나눌 어떠한 근거도 없다.

다음은 집단으로써 가족과 개별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전제에 대한 의문이다. 현실세계에서 개별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단위로서 가족의 이해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여성부(2003)가 수행한 전국가족조사에 의하면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라고 응답한 남성은 16.4%인데 반해 여성은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1.7배 이상 이혼을 고려한 경험이 많다는 것은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해가 상이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령 남성과 여성의 이해가 상호보완적으로 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킬지는 모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베커가 주장한 것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한) 단위로서 가족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결혼해체(이혼)의 순간 여성과 남성의 이해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Coontz, 1992).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은 이혼 이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윤홍식, 2003).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이념의 지배하에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안정화’에 대한 요구는(이미경, 1999) 여성의 무급노동을 기반으로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단위로서 가족과 남성의 이해와는 일치할지 모르지만 여성의 이해와는 전면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가족 구성원간의 일치된 이해를 전제하는 차이에 근거한 양립은 가족과 사회에서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남성과 남성을 중심으로 사고되는 ‘가부장적 사회’를 위한 양립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근거한 양립의 관점은 여성의 특수성을 옹호·지지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외양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래쉬(Lasch, 2004)는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부·모 모두가 일하는 가족만을 장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족정책에서) 여성(모성)의 특수성이 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의 예는 가족 내에서 행하는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실질적으로는 모)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이다. 독일의 경우 (비록 자산조사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족에 대해 부모의 취업여부 및 부모휴가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양육수당(Erzehungsgeld)을 지급하고 있다.¹⁶⁾(Leria, 2002). 더불어 독일의 사회학자들은 아동양육임금

14) 길리건(Freedman, 2002, 48)은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태도의 차이는 어떤 내재적인 생물학적 본질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라는 요소들이 재생산의 생물학과 결합하여 남녀의 경험을 형성하고 섹스들 사이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초도로우는 모성이 자연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초도로우는 의식적 선택은 아니지만 (어린나이에) 무의식적 선택에 의해 여성에게 모성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15) 아이젠슈타인(1986)은 이러한 모성의 성립을 정치적 모성(political motherhood)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6) 독일에서 아동양육임금 수급대상은 3살 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에서, 7세 아동까지 확대되었고,

(child care salary)을 제안하고 있는데, 기본적 이념은 부·모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과 가족 내에서 행하는 양육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비록 보살핌 노동에 대한 현금지원 문제가 취학 전 아동을 둔 여성의 75~8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여성이 가족 내에서 행하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현금지원(a caring wage)은 오랫동안 중요한 논쟁으로 남아 있다(Gornick and Meyers, 2003). 또한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부터 영아에 대한 모성의 필요성과 여성에게 모성과 노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특별)양육수당(a Special Care Allowance)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Lijestrom, 1978), 1994년 7월 비좌파연립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물론 양육수당은 1994년 9월 선거에서 시민당이 재집권하자 폐기되었다)(Bergqvist and Jungar, 2000). 이러한 정책들은 가족 내에서 행하는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여성이 돌봄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Lewis, 1993)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이다.

정리하면 차이에 근거한 양립 정책들은 단위로써의 가족과 남성의 이해와 일치할지는 모르지만 여성의 이해와는 배치되는 '양립' 정책이다. 왜냐하면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이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을 완화했기보다는 오히려 성간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¹⁷⁾(Leria, 2002).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은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저출산과 한 부모가구의 빈곤문제 등 가족 변화의 결과로 야기된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윤홍식, 2004). 결국 현실 세계에서 차이에 근거한 일-가족 양립정책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한 양립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2) 순차적 일과 가족의 양립: 평등 그러나 해소되지 않는 차이

기혼여성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차이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은 더 이상 유용한 양립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논쟁은 기혼여성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Leria, 1998). 오히려 현재 복지국가는 여성에게 보살핌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부담을 강제하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의 주요 책임자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요구되는 생계부양자의 역할 또한 감내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산업사회를 연구한 미르달과 케인(Myrdal and Kein, 1956; Leria, 2002에서 재인용)은 '순차적(sequential)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을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서구사회의 주된 일과 가족의 양립 형태는 대부분 순차적 양립정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순차적 양립정책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과 유사하나, (부차적이지만) 생계부양

종국적으로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확대된다.

17)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래쉬(2004)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직업을 가지는 가족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시민들에게 가족 내 모든 성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족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에 근거한 양립 정책에 비해 성별 분업이 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Leira, 2002). 그러나 이러한 대안모색에도 불구하고 성별분업(차이)에 근거한 전형적 가족모형의 핵심적 내용은 (수정된 형태이기 하지만) 순차적 양립정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다.

순차적 양립정책은 여전히 여성에게 보살핌의 주요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순차적 양립정책의 주체는 여성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들 수 있다. 부모휴가¹⁸⁾는 모성휴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일하는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정책이다(Gornick and Meyers, 2003). 명목적이지만 성 중립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휴가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양립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어머니)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부모휴가가 여성에게 순차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내 보살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여성은 가족으로 돌아오고, 해당 욕구가 해소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윤홍식, 2004). 실제로 가장 여성 친화적인 가족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스웨덴에서조차 전체 부모휴가 기간의 대부분인 91.0%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휴가기간의 99.0%를 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runing and Platenga, 1999)¹⁹⁾. 중요한 것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휴가의 이용에서 나타나듯 가족 내에서의 성별분업은 전형적 가족과 같이 여전히 고착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Charles, 2000). 물론 부모휴가의 효과는 휴가기간과 소득보장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휴가가 성 중립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착화시키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의 부모휴가 이용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유발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더욱 낮춤으로써 가족 내 성별분업을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순차적 양립정책은 양립의 주체가 차이에 근거한 양립과 달리 ‘단위로써의 가족’이 아니라 개별 주체인 ‘여성’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남성(아버지)은 양립문제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차적 양립정책은 차이에 근거한 양립정책과 마찬가지로 남성 자신이 참여하는 노동시장과 (여성의 돌봄 노동으로 지탱되는) 가족의 양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순차적 양립정책 또한 여성이 가족 내에서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18) 부모휴가(Parental leave)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제165호와 유럽연합의 명령(Directive)에 의하면 모성휴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부 또는 모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든 제도를 지칭한다.

19) 스웨덴은 450일간의 유급부모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아동의 나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 또는 모에게 유급 부모휴가를 주고 있다(Moss and Deven ed, 1999).

(3)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 평등을 향하여 그러나 너무나 느린 변화

릴예스트롬(Liljestrom, 1978)은 스웨덴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70년 유럽의 가족정책이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와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의 모형으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생계부양자가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가족형태가 성별분업에 근거한 전형적 가족에서 성에 따른 구분 없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을 함께 나누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현재 많은 여성주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양육자 모형과 유사하다. 부모가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한다면 성별차이는 해소될 것이라는 초도로우(Chodorwo, 1978; Freedman, 2003에서 재인용)의 주장, 고르닉과 메이어(Gornick and Meyers, 2003)의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 모형, 여성의 시민권에 근거해 남성을 재규정하려는 리스터(Lister, 2000)의 주장 등은 그 구체적 내용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양립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주장들이다.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은 기존의 가족정책에 온전하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는 방안이다. 이분법적 사고는 여성의 모성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동권이 약화되고, 반대로 노동권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특수성에 근거한 모성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성권과 노동권의 문제는 '월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와 같은 대립의 문제도,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대립과 선택의 딜레마는 노동권과 모성권을 여성의 문제로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만약 모성권과 노동권의 조화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 모두의 문제라면 두 권리의 대립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국가들조차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ota)²⁰⁾와 남성과 여성의 휴가 기간을 동일하게 할당하고 있는 부모휴가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휴가는 형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휴가기간이 동일하게 할당되어 있지만 무급인 관계로 남성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상 여성이 이용하는 경우도 저조해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²¹⁾ (Gornick and Meyers, 2003). 그러므로 보편적 양립정책은 아버지 할당제에 내재된 정책의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로 아버지가 아동양육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정책의 명칭과 대상만 놓고 보았을 때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에게 특정한 아동양육휴가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성 통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의 부모휴가사용을

20) 남성의 부모휴가 참여는 스웨덴과 같이 부모휴가 기간의 일정부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태리와 같이 남성이 부모휴가의 일정기간을 이용할 경우 부모휴가 기간 늘려주는 경우가 있다.

21) 그리스는 부부 각각에게 3개월씩, 아일랜드는 각각 14주씩,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각각 6개월씩, 스페인은 아동이 3살 될 때까지, 영국은 각각 13주씩 무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제도화함으로써 남성이 아동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함께 나눈다는 보편적 보살핌 모형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 할당제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양육자라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아버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이해 될 수 있다(Leria, 2002). 현재 유럽국가 중 아버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²²⁾, 아이스랜드 등이다(Leria, 2002, 1998). 역사적으로 아버지 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²³⁾, 1980년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제안되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했고, 1993년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제도화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스웨덴과 덴마크가 제도화 하였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스웨덴과 달리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휴가의 확대 속에 도입되어 대상 남성의 70~80%가 제도를 이용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Leria, 2002). 아이젠슈타인(1986)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생물학적 모성을 제외하고 양육과 보살핌의 모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모성이라면, 아버지 할당제는 아버지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새롭게 정치적부성의 창조를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페이트만(2001)²⁴⁾의 주장처럼 부성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아버지 할당제는 아동양육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부성(좋은 아버지)을 사회적·정치적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버지 할당제는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보편적 양립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당제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는 ‘아버지 할당제’는 노동하는 주체인 남성의 권리이기보다는 가족의 권리로 이해되어 그 급여의 자격이 대부분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OECD, 2005).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편적 양립을 지향했을 때 그 권리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에 기반 해야 한다. 아버지 할당제가 가족을 기반으로 한 권리로 이해될 때 남성은 권리의 완전한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양육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아버지 할당제’는 가족을 단위로 합산되어지는 권리에서 개별 부와 모의 독립된 권리로 전환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할당제가 오히려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 휴가라는 명시적 제도로 인해 남성에게 그 휴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부성의 책임을 다했다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남성들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모휴가기간 중 남성이 이용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하다(Bruning and Platenga, 1999). 셋째는 아버지 할당제가 특정 계층(중산층)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버지 할당제가 논의된 역사적 시점에 대한 천착을 통해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중산층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소위 가내하인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중산층 여성이 가사노동의 전담자

22) 덴마크의 아버지 할당제는 2001년에 폐지되었다 (OECD, 2002).

23) 1973년 스웨덴 중도당(Centre Party)의 두 명의 의원이 부모휴가를 한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일부 여성 시민당의원들이 당론에 반해 이를 지지하였으나 당시는 실현되지 못했다(Bergqvist and Jungar, 2000)

24) 본 저자가 인용한 페이트만의 주장은 그녀의 본래의 주장과는 다르다. 실제로 페이트만은 창조된 부성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성이 사회적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함께 나눈다고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창조된 부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 되었다는 점이다(Gittins, 1997). 이어서 6·70년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노동계급 여성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가사노동과 노동시장 참여의 이중부담이 중산층 여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즉, 남성의 보살핌 노동의 참여 문제가 가족정책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시기는 중산층 여성이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적 부담이 강화되면서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70년대에 이슈화된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는 중산층 기혼여성의 이해에 근거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버지 할당제를 이용하지 않는 많은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휴가 이용이 직장 내 승진 등 직업경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Brandth and Overli, 1998; Lenia, 2002에서 재인용). 즉, 양육 등 보살핌 노동을 나누는 문제는 어쩌면 성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래쉬(2004)의 주장처럼 가족이 시장에 종속되지 않고, 가족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는 한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결국 성별분업에 근거한 부부중심의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자본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보편적 양립은 자본주의 체제(노동시장)와 가족자체의 변혁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Eliot, 1992).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양육의 책임을 나누게 하는 아버지 할당제의 정책적 의도는 보편적 양립을 위한 진일보된 시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가족정책의 재구조화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정책을 성 통합적으로 재구조화기 위해 요구되는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가족정책의 틀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가족정책 영역의 문제로 성 통합적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서 다루어야 할 가족정책의 내용들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관점, 틀, 영역(내용)의 논의에 근거해 성 통합적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관점

가족정책을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모의 소득활동과 가족원(특히 아동)에 대한 보살핌과 이 둘 간의 조화(양립)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했을 때 ‘가족정책’에 요구되는 관점은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일컬어지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성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 문제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성 통합적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족정책의 핵심명제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족정책의 관점은 ‘일과 가족 양립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공·사적영역의 분리의 실

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일과 가족 양립 문제는 현상적인 양립 여부의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양립의 주체가 누구인가가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적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논의했듯이, 본 논문은 양립의 주체가 단위로서의 가족, 여성, 노동의 주체(여성·남성)인가에 따라 '차이에 근거한 양립', '순차적 양립', '보편적 양립'으로 구분했다. 양립의 세 가지 형태구분의 기준은 특정한 성에게 그 성의 특성(차이)에 근거해 특정한 활동 영역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본 논문은 양립의 주체가 가족으로 이해될 때 여성의 영역은 가족 내로 제한되고, 양립의 주체를 여성의 문제로 접근할 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시장과 가족의 이중적 부담을 감내해야 함으로써 온전한 시민권의 성취가 제약받는다 주장했다. 즉,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성 통합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을 '양립' 주체로 함께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족정책의 관점은 가족을 둘러싼 근본문제가 자본주의의 출발과 함께 시민의 생활이 성별에 따라 공·사적영역으로 분리되었다는 가정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공·사적영역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가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다.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세계가 공·사적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이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소위 공적세계에서 남성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Freedman, 2002).

구체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가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중요한 논거에 의해 부정된다. 첫째, 산업화 이후 가족이 아무런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Eliot, 1992; Gittens, 1997). 가족은 지금도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가사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또한 산업혁명 이전에도 경제활동의 일정부분은 가족의 영역에서 벗어나(노동시장에서) 임노동의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의 가족을 지극지족하는 단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Middleton, 1979; Eliot, 1992에서 재인용). 둘째, 현실 세계에서 공·사적영역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Dahlerup, 1989) 그 구분이 점차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적영역의 주체라고 간주되는 여성의 시민권에 대한 보장은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육의 사회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이 소위 공적영역에서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2세대 페미니즘의 주장과 같이 개별적 여성이 일상적으로 사적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공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일과 가족 양립의 주체를 가족 또는 여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공·사적분리의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는 남성이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보살핌 노동에 의존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Lister, 1997; Freedman, 2003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보편적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관점은 허구적 공·사적 분리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일과 가족 양립을 성별 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은 시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함께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돌봄과

보살핌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 노동하는 장소

가족을 둘러싼 문제가 허구적 공·사적영역의 분리에 근거하고 이에 대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가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어떤 틀 거리로 묶어 낼 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이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물다. 가족정책의 틀 내에서 성 통합적 양립 관점을 제시한 예는 릴예스트롬(Liljestrom, 1978)에서 찾을 수 있다.²⁵⁾ 릴예스트롬(1978: 35쪽을 참고하라)은 가족정책의 틀로써 사회적 역할을 함께하는 가족모형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명의 시민이 생계 부양과 여가를 함께 나누는 가족형태를 제시했다. 세인즈베리(Sainsbury, 1999), 리스터(Lister, 2000), 고르닉과 메이어(2003) 등도 릴예스트롬(1978)과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족정책의 문제를 접어 두고서라도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문체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²⁶⁾ 최근 김수정(2004)은 복지국가를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원)정책을 어머니와 아동의 필요에 대한 국가의 지원문제로 정의함으로써(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관계없이) 남성을 가족정책의 논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김인숙 외(2004)의 논의에서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틀에 대한 고민들이 시도되었다.²⁷⁾

그렇다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성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틀 거리는 무엇일까? 남성과 여성이 노동을 행하는 공통의 노동하는 주체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허구적 공·사 분리에 의해 평가 절하되었던 가족 내에서의 보살핌 행위를 시장노동과 동등한 ‘노동’으로써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살핌 행위에 노동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살핌 노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살핌 노동이 시장노동과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를 ‘노동하는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성 중립적으로) 남성·여성이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돌볼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선택’은 실제로는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25) 물론 남성이 사적영역의 문제라고 간주되는 아동양육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의 로시(1977, Eliot, 1992 재인용), 오클리(1976, Eliot, 1992 재인용), 초도로우(Freedman, 2002 재인용), 길리건(1982, Freedman, 2002과 Lasch, 2004 재인용)은 모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남성이 양육책임을 나누는 것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리스터(2000)는 여성의 시민권에 근거해 남성을 재규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6) 김혜경(2004)은 구체적으로 보살핌노동에 대한 성 통합적 접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혜경·홍승아(2003)는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기하면서 성 통합적 관점에 근거한 보편적 돌봄 노동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27) 김인숙 외(2004)의 논의는 선우덕 외(2004)의 초보적 논의를 발전적으로 수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선우덕 외(2004)의 167쪽에서 173쪽과 김인숙 외(2004)의 24쪽에서 39쪽을 참고하라.

불어 보살핌 노동에 대해 ‘양육수당(care allowance) 등’과 같이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핀란드에서와 같이 보살핌의 담당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고착화해(OECD, 2005) 여성의 완전한 시민권을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핌 행위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활동과 가족 내에서의 보살핌 활동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돌봄 노동과 시장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보살핌 노동을 시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때 노동이 성에 따라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할 모든 논거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보살핌 행위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도, 여성이 행하는 노동과 남성이 행하는 노동의 내용이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상이하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여성은 보살핌으로 대표되는 가사노동만을 수행하거나, 가족과 시장에서 이중노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의 이해는 대부분 시장노동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은 동등한 ‘노동’의 수행자로서 여성과 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행하는 ‘노동’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적이지만 상이한 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성과 여성이 행하는 ‘노동’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노동을 행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이해를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보살핌(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으로 구분할 때 우리는 허구적 공·사적영역의 분리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많은 재생산 노동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생산 노동은 무급노동이라는 통념과 달리 시장에서 행해지는 재생산노동은 생산노동과 같이 유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재생산노동=무급=가족=여성, 생산노동=유급=시장=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틀은 남성과 여성의 공통의 이해와 상이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적 영역의 분리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반영하되, 공·사적영역의 분리가 가지는 모호함에 대한 대안을 내와야 한다. 즉, 가족정책의 틀은 노동하는 주체가 노동을 행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시장과 가족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를 위한 틀이 노동하는 주체(여성과 남성)가 노동을 행하는 장소에 따라 시장과 가족영역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허구적 공·사적영역의 분리가 여성의 불완전한 시민권과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완전한 시민권의 성취와 불평등의 해소는 허구적으로 분리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통합하데 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통합의 주체가 누구이고 통합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사적영역은 통합의 대상이지 통합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사적영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소위 사적영역에서 생산노동을 강화할 수도 공적영역에서 재생산 노동을 강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공적영역은 생산영역이고 사적영역은 재생산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국 통합은 물리적이기보다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노동하는 주체가 성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통합(동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노동이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이를 통합하는 주체가 노동하는 남성과 여성이라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통합은 구분되는 두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동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적영역의 분리가 갖는 모호함은 극복하되, 공·사적영역의 분리가 갖는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는 공·사적영역에 따른 구분대신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노동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노동하는 장소에 따른 구분은 페미니즘의 주요한 문제의식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로 인한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나아가 공·사 영역 분리를 해체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가족정책의 틀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정책내용, 정책대상, 가족기능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책의 분류는 정책분석의 중요한 준거이므로, 정책의 주요한 관심사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틀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정책을 가족구성원(노동하는 주체)이 노동을 행하는 장소에 따라 시장과 가족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주요한 관심사 목적이 두 영역에서 노동하는 두 주체인 남성과 여성의 원활한 노동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3) 노동하는 장소에 근거한 가족정책의 영역·내용

<표 2>는 가족정책을 가족 구성원(주로 부·모)이 노동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해 가족정책의 영역을 시장과 가족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시장영역에서 중심적 가족정책은 가족 구성원(부·모)이 소득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조건의 평등과 관련된 문제인데, 노동하는 주체인 남성과 여성(부·모) 노동력의 상품화(commmodification) 및 보살핌 노동의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²⁸⁾와 관련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부

28) 탈가족화의 개념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스핑 앤더슨(1999: 51)은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와 평행(parallels)하게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가족화는 탈가족화 정책을 설명하면서 정의하고 있는데, 탈가족화 정책이란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켜, 가족 및 부부간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탈가족화를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핑 앤더슨의 탈가족화 논의에서 여성이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제기되고, 탈가족화가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전체로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 데일리(Daly, 2000)는 아동을 돌보는 일이 부모에서 사회로 이전되는 문제를 탈가족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대로 가족화란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시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레리아(Leria, 2002)도 데일리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탈가족화란 가족 밖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피터슨과 고노(Peterson and Gono, 1988, 장경섭, 1992 재인용)는 가족원(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을 수행하는 주체가 가족에서 기관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탈가족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탈가족화의 개념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가족정책을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전체에 충실했을 때 데일리와 레리아의 논의와 같이 탈가족화란 부·모로써 남성과 여성이 아동을 돌보는 노동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부·모(또는 다른 가족원)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탈가족화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에스핑 앤더슨이 사용한 (탈)상품화를 보충하는 또는 전체하는

· 모(가족구성원) 노동력의 상품화, 즉, 노동권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 내 보살핌의 욕구가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통해 충족될 때(탈가족화 될 때) 가능하므로 노동하는 주체인 부·모 노동력의 상품화는 필연적으로 보살핌 노동의 탈가족화를 수반한다. 실제로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30대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와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무려 6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정책을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시장영역의 주요한 정책내용은 이러한 장애를 완화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주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표 2>의 (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육의 사회화, 방과 후 프로그램, 노동시간 선택제도 등이 있다. 또한 시장영역에서의 노동권 보장 정책은 (다)의 사회보장 수급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²⁹⁾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시장영역에서의 노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 수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³⁰⁾ 다만 사회보험 수급권은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여부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와 관련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시장영역에서의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사회보장 수급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의 노동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영역에서의 가족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고용 보장이라는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성 통합적 가족정책의 사례

	조건의 보장	결과의 보장
시장영역: 노동권 보장	(가) (공공)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 직장보육, 노동시간 선택제도, 성폭력 등에 관한 법률	(다) 소득(세금)공제제도, 사회보험, 퇴직연금 등
가족영역: 가족권 ³¹⁾ 보장	(나)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아버지 할당제, 양육수당, 양육임금, 주부연금, 가족(아동)수당 등	(라) 공공부조, 가족수당 등

선우덕 외(2004)와 김인숙 외(2004)의 표를 수정 보완한 것임.

다음은 가족영역과 관련된 정책이다. 여기서 핵심적 과제는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영역의 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의 가족화(familialization)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수반한다. 여기서 가족화³²⁾는 가족구성원(주로 부·모)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상품을 생산하

개념으로써 탈가족화가 아니라 (탈)상품화와 병립하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탈가족화를 정의한다. 반대로 가족화란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나와(부·모의 노동력이 탈상품화되어서)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29) <표 2>에서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족정책을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다)와 (라)셀의 정책들은 주요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30)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탈상품화는 상품화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 본 논문에서 가족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주로 자녀를 의미함)을 가구(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는 권리(가족화)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모가 집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보장(탈상품화)되어야 가능한 권리이다.

는데 쓰이지 않고, 가정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주로 자녀)를 돌보는데 쓰인다는 의미에서 데일리(2000)의 가족화의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에스핑 앤더슨이 정의한 탈상품화의 과정과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데, 부·모의 노동력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쓰이지 않고 가족원을 돌보는데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임금보존이 이루어진다면 가족화가 탈상품화와 수반되어 나타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나올 경우 소득이 감소(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가구는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에서 노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또는 가족 구성원)의 가족권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보살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족영역에서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사례로는 <표 2>의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성, 부성, 부모휴가, 아버지 할당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리하면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틀에 근거한 가족정책의 영역(내용)은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다른 가족원을 보살핌 권리(가족권)와 시장영역에서 노동의 권리(노동권)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방향³³⁾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허구적 공·사적영역의 분리에 대한 대안으로써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 방향 하에서 구체적 가족정책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같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생계부양자와 돌보는 자의 역할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보편적 생계부양자·보살피는 자의 실현을 위해 여성에게는 시장영역으로의 진입(상품화)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내는 것이고, 남성에게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가족화)하는 것이다. 이는 웰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라는 명제 하에 대립적으로 이해되던 노동권과 모성권(가족권)의 문제를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공통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만약 여성만이 보살핌의 주체가 아니라 남성도 보살핌의 주체가 된다면 소위 웰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라고 불리던 노동권과 모성권(가족권)의 대립은 현저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보살핌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동안 보살핌의 권리(가족권) 행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이 남성과 여성의 모두의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불이익이 일거에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족권

32) 가족화도 탈가족화와 같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돈젤롯(Donzelot), 바렛(Barret), 맥킨토시(MacKintosh) 등(Gittins, 1977: 204)은 가족화를 가족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공공시설에 수용되게 되는데, 해당 수용시설의 운영이 철저히 가부장적 가구의 이념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해 시설들의 '가족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33) 본 절의 논의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행사로 인한 불이익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현저히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역할이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은 구체적 가족정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키려 해도 그 결과는 개별정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주제는 개별 가족정책이 가지는 정책방향에 관한 것이다. <표 3>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모두 일과 가족 양립과 관련된 정책들이지만 차이와 평등의 문제에서 논의 했듯이 각각의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상이하하다. 먼저 노동의 주체가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살필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화는 그 권리가 상품화(commodification)를 수반하는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수반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동양육수당(Erziehungsgeld), 부모휴가(parental leave),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가 자녀를 가족 내에서 돌볼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노동력을 ‘가족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화에 수반되는 정책방향은 상이하하다. 독일 아동양육수당의 가족화는 취업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가 가족 내에서 행하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화폐적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보살핌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의 노동력을 가족 내에서 상품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부모휴가는 부·모가(노동시장으로부터 나와) 가정에서 자녀를 보살필 때 발생하는 노동 소득상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정책의 차이는 앞서 차이와 평등의 논의에 근거했을 때 상이한 일과 가족 양립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가족화가 상품화를 수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가족화시키는 대부분의 주체는 특정한 성(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진산업사회라고 할지라도 여성이 사적 돌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화를 동반하는 가족화의 양립정책은 성별 차이에 근거한 양립의 지향성을 내재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부모휴가는 노동력의 가족화를 노동시장에서의 탈상품화에 근거해 보장함으로써 남성 또는 여성의 위치를 특정한 영역에 고정시키지 않는다. 탈상품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상품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여성이 부모휴가와 같은 가족화-탈상품화 정책의 주요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이해는 특정 영역(가족 또는 시장)에 제한되지 않고 시장과 가족 두 영역 모두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정책의 주체가 남성과 여성이라면 가족화-탈상품화 정책은 실제적으로 보편적 일-가족 양립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순차적 또는 보편적 양립정책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³⁴⁾

가족화-탈상품화 정책이 순차적 양립을 지향하는가 보편적 양립을 지향하는가는 해당 정책이 성 분리적인가, 성 통합적인가에 따라 상이하하다. <표 3>의 내용과 같이 부모휴가 등은 대부분 여성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성 분리에 근거한 탈상품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휴가기간 중 아버지에게 특정기간을 할당하는 ‘아버지 할당제’는 그 대상이 남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성 분리적 탈상품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남성이 여성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게 한다는 제도의 취지

34) 남성과 여성이 부모휴가를 동등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부모휴가를 보편적 양립제도로 간주할 수 있지만, 부모휴가가 현재와 같이 특정성이 사용하는 제도라면 부모휴가는 순차적 양립의 형태를 지향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를 고려했을 때 성 통합적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탈상품화에서 성 분리와 통합의 문제는 순차적 양립과 보편적 양립정책을 구분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일-가족 양립정책에서 가족화가 성 분리에 근거한 탈상품화를 지향할 때 해당 정책은 특정한 성이 대부분의 수급자가 됨으로써, 특정한 성에게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순차적 양립정책'이 되는 것이다. 반면 가족화가 성 통합적 탈상품화를 지향할 때 모든 성이 정책의 주체가 됨으로써, 시장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보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보편적 양립정책'이 되는 것이다.

<표 3> 노동력의 (탈)가족화와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본 일-가족양립 정책³⁵⁾

	상품화 Commodification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성 분리	성 통합
가족화 Familialization	모성임금, 양육(돌봄)수당, 주부연금	모성휴가, 부성휴가, 아버지할당제 등	부모휴가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	아동양육시설,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노인요양시설	해당사항 없음.	

다음으로 가족구성원(노동하는 주체)의 보살핌 노동력의 탈가족화와 관련된 정책은 가족구성원의 보살핌에 대한 필요를 가족 밖에서 충족시킴으로써 가족구성원(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 이러한 노동력의 탈가족화가 상품화를 수반하는 경우는 특정한 성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양립형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돌봄 욕구의 충족이 가족구성원 이외의 주체에 의해 충족된다고 했을 때, 돌봄 노동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탈가족화-상품화는 여성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의 가정보육(family day care or three-family systems)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고용한 보육사가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와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Meisaari-Polsa, 1997) 다른 노동주체(주로 여성)의 노동력의 탈가족화 및 상품화와 수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화 정책과 달리 탈가족화 정책이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수반하는 정책은 현실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정리하면 성 통합적으로 재구조화된 가족정책의 방향은 남성에게는 보살핌 노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시장에서의 노동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이해가 시장과 가족 영역에 동시에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일-가족 양립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가족정책은 가족화-성 통합적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상품화의 조합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살핌의 주체이자 시장에서의 노동활동의 주체로서 이중적 정체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의 주요한 근원

35) 레리아(2002)도 탈가족화와 탈상품화와 관련해서 저자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이 어떻게 탈가족화와 탈상품화와 결합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으로 지적되는 허구적 공·사적 영역의 분리에 대한 성 통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4. 정리 및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2003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사회는 가족정책의 명시적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건가법에 적시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가족의 전통적 기능과 형태의 강화에 집중됨으로써 한국사회의 가족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내올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홍식, 2004). 실제로 서구의 경험을 반추해 보았을 때 가족 변화의 주요한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 빈곤의 여성화는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의 강조를 통해서만 완화될 수 없다(Esping-Andersen, 1996; Sleebos, 2003; 윤홍식, 2004). ‘전형적 가족’에 대한 강조는 기든스(2000)의 주장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 있다. 경험적 증거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낮은 빈곤율이 전통적 가족형태와 가치를 강조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isra and Moller, 2005; 윤홍식, 2004). 더욱이 에스핑 앤더슨(1996)의 지적처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규정이 후기산업사회 변화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전형적 가족에 대한 강조는 후기산업사회의 가족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표 4>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공통의 이해와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개별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은 허구적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냄으로써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탈가족화) 전략을 수반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과제가 탈상품화에 선행하는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와 탈가족화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과제는 가족 내의 보살핌 노동의 책임

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과제로서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 및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탈가족화)와 함께 복지국가 재편의 과제로서 보편적 보살핌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단계적 과제로 간주될 수 있는 두 과제가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 가족의 변화가 서구사회의 변화속도와 정도를 넘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4년 1.16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혼율의 증가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족의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은 단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완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구 내 생계부양자가 남성 1인에서 여성과 남성 2인으로 이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살핌 노동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만 묻는다면 여성은 더 이상 생계부양과 보살핌을 양립 가능한 선택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가족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보편적 보살피는 자’에 대한 지향은 단계적 과제가 아닌 동시적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결혼해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점증하고 있는 한 부모가족을 고려했을 때 개별 노동주체가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의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 것은 가족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한 부모에게 있어 생계부양과 보살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부모가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가는 해당 국가의 가족정책이 보편적 양립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적 준거가 되는 것이다(Millar, 1996; Misra and Moller, 2005에서 재인용). 즉,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를 전제한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의 구현은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현재 한국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점검해 보면 논의의 중심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가족정책은 한국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주체이기보다는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복지정책의 부차적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저출산과 결혼해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응은 당위적 선언을 되풀이할 뿐이다.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공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때문이다. 가족정책의 과제가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1932년 스웨덴 사민당이 처음 집권한 이후 미르달(Myrdal)이 인구감소의 문제를 젠더 불평등을 푸는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와 접목시킴으로써(Hirdman, 1998) 보편주의적인 스웨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역사적 경험을 천착할 때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는 우리에게 가족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구나 보수와 진보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출산과 결혼해체로 대표되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위기의식을 ‘보편적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는 복지국가 재편의 대안적 논의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천. 2000.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5: 71-102.
- 김수정. 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209-233.
- 김인숙·정재훈·윤홍식. 2004. 『가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김혜경. 2004. “보살핌 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75-106.
- 남찬섭 역, 1992. 비교사회정책. 월렌스키, H, 루버트, G., 한, S., 재미슨, A. 1982.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선우덕·황나미·송현중·박영란·윤홍식·김남수. 2004. 『인구고령화와 보건복지대책: 노인여성가족부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병철·서동인 역, 1992. 가족사회학. F. Elliot. 1986. The family: Change or continuity. 서울: 을유문화사.
- 안호용·김홍주·배선희 역, 1997. 가족은 없다: 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 Diana Gittens. 1985. *The family in question: 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ideologies*. 서울: 일신사.
-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인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통계표 및 해설자료』.
- 오정화 역, 2004. 여성과 일상생활. C. Lasch. 1998. *Women and the common life*.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윤홍식. 2004.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4: 263-293.
- 윤홍식. 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3: 51-73.
- 이미경. 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서울: 공감.
- 이박혜경 역, 2002. 페미니즘. J. Freedman. 2001. *Feminism*. 서울: 이후.
- 이진숙. 2003.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검토”. pp. 21-46. 2003년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 이충훈·유영근 역, 2001.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C. Pateman. 1988. *The sexual contract*. 서울: 이후.
- 이혜경·홍승아. 2003. “성통합적 복지국가 재편 논의를 위한 여성주의적 비판”. 『사회보장연구』 19(1): 161-189.
- 임성근 역, 2003. 미야모토 타로. 1999.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모델의 정치경제학. 서울: 논형.
- 장경설. 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 173-204.
- 장지연. 2004.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 38(2): 177-200.
-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개발원.
- 최경석·김양희·김성천·김정운·박정운·윤정향.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 최은정·임소희·임혜련·정광숙 역, 2005. 젠더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J. Lorber. 2001. *Gender*

- inequality: feminist theories and politics* (2nd ed.). 서울: 일신사.
- 통계청. 2002. 사회통계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9.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pp. 84-122. 싸쑤, 앤 편, Dahlerup, D. 1989.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영역의 변화.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연구회 역, 2000. 가족정책을 위한 탐색. pp. 201-229. L. Harding. 1996.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서울: 새물결.
- 한상진·박찬욱 역, 2000. 제3의 길. A. Giddens. 1998. *The third way*. 서울: 생각의 나무.
- 한정자 역, 1986. 현대여성해방사상. H. Eisenstein. 1984. *Contemporary Feminist Thought*.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ecker, G.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gqvist, C., and A. Nyberg. 2002.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pp. 287-308.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Michel S., and R. Mahon New York: Routledge.
- Bruning, G., and J. Plantenga. 1999. "Parental leva and equal opportunities: Experiences in eight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195-209.
- Charles, N. 2000. *Feminism, the state and social policy*. Great Britain: Macmillan Press LTD.
- Coontz, S.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Y: Basic Books.
- Daly, M. 2000. *The Gender Division of Welfare: the Impact of the British and German Welfare Stat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rkheim, E. 1960[193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Esping-Andersen, G. 1996. "After the golden age? Welfare state dilemmas in a global economy." pp. 1-31. in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edited by G. Esping-Andersen. CA: Sage Publications.
- Esping-Andersen, G. 1997. "Welfare states at the end of the century: The impact of labour market, family and demographic change." pp. 63-80. in *Social Policy Studies, No. 21: Family, market and community: Equity and efficiency in social policy*, edited by OECD. France: OECD.
- Fraser, N. 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pp. 1-32. in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edited by Hobson, B. Routledge.
- Gauthier, A. 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lbert, N., and H. Specht. 1986.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NJ: Prentice-Hall.
- Gornick, J., and M. Meyers.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irdman, Y. 1998. "State policy and gender contracts: the Swedish experience." pp. 36-46. in *Women, work and the family in Europe*, edited by E. Drew, R. Emerek, and E. Mahon. New York, NY: Routledge.
- Kamerman, S., and A. Khan. 1978. "Families and the idea of family policy." pp. 1-16. in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edited by S. Kamerman and A. Kh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ria, A. 1998. "The modernisation of motherhood." pp. 159-169. in *Women, work and the family in Europe*. edited by Drew, E., R. Emerek, and E. Mahon. New York: Routledge.
- Leria, A.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J. 1993. "Introduction: Women, work, family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in *Women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Work, family and the state*. edited by Lewis, J. VM: Edward Elgar.
- Liljestrom, R. 1978. "Sweden." in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edited by Kamerman, S. and A. Kh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ster, R. 2000. "Dilemmas in engendering citizenship." in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edited by Hobson, B. New York: Routledge.
- Mahon, R. 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lens of child care." pp. 1-27.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Michel S. and R. Mahon New York: Routledge.
- Meisaari-Polsa, T. 1997. "Sweden: a case of solidarity and equality." pp. 302-347. in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ume 1: Structures and trends in the 1980s*, edited by F. Kaufmann, A. Kuijsten, H. Schulze, and K. Strohmeier.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 Misra, J., and S. Moller. 2005. "Familism and welfare regimes: Pover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ies." LIS working paper no. 399.
- Moss, P., and F. Deven. 1999. "Parental leave in context". pp. 1-24. in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edited by Moss, P., and F. Deven. Brussels: NIDI/CBGS Publications.
- O'Conner, J., A. Orloff, and S. Shavr.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Paris, France: OECD.
- OECD. 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Canad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Paris, France: OECD.
- Parsons, T., and R. Bales.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Pateman, C. 1987.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pp. 231-260. in *Democracy and welfare state*, edited by A. Gutma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insbury, D. 1999. "Taxation, family responsibilities, and employment." pp. 185-209. in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edited D. Sainsbury. New York: Sage Publication.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 Valiente, C. 2002. "The value of an educational emphasis: Child care and restructuring in Spain since 1975." pp. 57-70.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S. Michel, and R. Mahon. New York: Routledge.
- Zimmerman, S. 1992. *Family policies and family well-being: The role of political culture*. CA: Sage Publication.

〈부록 1〉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본 가족정책의 틀 (종합)

권리	정책	젠더	양립의 형태	공·사 영역	권리의 대립과 통합
<p>노동권</p> <p>가족권</p>	<p>가족화+탈상품화</p> <p>가족화+상품화</p> <p>탈가족화+상품화</p>	<p>성분리</p> <p>성통합</p>	<p>차이에 근거한 양립</p> <p>순차적 양립</p> <p>보편적 양립</p>	<p>공사분리준치</p> <p>공사영역통합</p>	<p>노동권과 가족권의 대립</p> <p>노동권과 가족권의 통합</p>
<p>[시민복지의 두 축] -시장노동을 통한 화폐소득 -물품을 받을 권리와 들볼 권리 〈표 2〉 참고</p>	<p>[노동권과 가족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정책과 정책의 목적] -부모휴가 (가족화+탈상품화) -출산휴가 (가족화+탈상품화) -공적보육제도 (탈가족화+상품화) -양육수당 (가족화+상품화) 〈표 3〉 참고</p>	<p>[성통합 여부] -정책의 결과가 성통합적인가 아니면 성분리적인가 -성통합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제기 〈표 3〉 참고</p>	<p>[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양립의 형태] -차이에 근거한 양립: 가족대 시장 -순차적 양립: 여성대 시장 -보편적 양립: 남성과 여성대 시장 〈표 1〉 참고</p>	<p>[정책과 공·사적 영역의 문제] -차이에 근거한 양립: 공사영역의 분리 준치 -순차적 양립: 안화된 형태의 공사영역 분리 준치 -보편적 양립: 공사영역의 통합</p>	<p>[노동권과 가족권] -공사영역분리 준치: 노동권과 가족권의 대립 -공사영역의 통합: 노동권과 가족권의 대립 완화(해소)</p>

Restructuring the Family Policy from the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Yoon, Hong-Si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family policy from the laborer's perspective, the issue of work and family becomes not a gender-related issue but rather an issue for universal people. Second, in order to include the difference in interest among men and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o view the issue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should consider the place of labor. Third,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Key word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gender,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family policy.

[접수일 2005. 6. 27. 게재확정일 2005. 10. 27.]